

중 국

[판례 분석]

© 저작권 표시의 저작권법상 성격

2025. 6. 25.
국제통상협력팀
북경사무소

중국은 저작권 발생에 대하여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저작물에 표기된 “©” 저작권 표시는 저작권 발생 유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다만, 저작권 표시는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으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기된 경우 저작자의 서명을 갈음하여 저작권 귀속을 증명하는 일차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1. 현황

컴퓨터 소프트웨어, 출판물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저작물에는 “©” 저작권 표시가 표기된 경우가 많음.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저작권 발생에 있어서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 저작권 표시 자체가 저작권 발생 유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 저작권 표시는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상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 본문에서는 학술지 및 학술 논문의 저작권 침해 분쟁에 관한 사례를 통하여 저작물에 표기된 “©” 저작권 표시가 저작권법상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봄.

2. 판례소개

사건 번호	1심	(2022) 京0491民初20446号	
	2심	(2024) 京73民終436号	
관할 법원	1심	베이징인터넷법원(北京互联网法院)	
	2심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識產權法院)	
당사자	A 회사		1심: 원고 2심: 상소인

	B 회사		1심: 피고	2심: 피상소인
핵심 쟁점	1심	1. A 회사가 주장하는 학술지 논문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는지 여부 2. B 회사의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 3. B 회사의 법적 책임		
	2심	1. A 회사가 주장하는 학술지 논문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는지 여부 2. B 회사의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 3. B 회사의 법적 책임		
판결 결과	1심	1. A 회사는 자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음. 2. B 회사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 3. B 회사는 A 회사의 경제적 손실 50,000위안 및 합리적 지출 5,000위안 등 총 55,000위안을 배상해야 함.		
	2심	1. A 회사는 자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짐. 2. B 회사는 A 회사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함. 3. B 회사는 A 회사의 경제적 손실 380,000위안 및 합리적 지출 100,000 위안을 배상해야 함.		
관계 법령	▪ 저작권법(著作權法) 제10조, 제54조 ▪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2019년개정) (最高人民法院關於民事訴訟證據的若干規定) 제17조, 제90조 제(1)항 제5호 ▪ 지식재산권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最高人民法院關於知識產權民事訴訟證據的若干規定) 제2조 ▪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當競爭法) 제8조, 제17조			
최종 판결일	2024년 12월 25일			

(1) 사건 개요

A 회사는 3종류의 학술지(이하 “분쟁 학술지”라 함) 및 이에 수록된 697편의 논문(이하 “분쟁 논문”이라 함)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 한편 B 회사는 연구소·대학 등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A 회사의 허가 없이 X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및 다수의 SNS 계정을 통해 분쟁 논문을 대량으로 제공하는 한편, 자사가 운영하는 학술 웹사이트에 분쟁 학술지를 소개하고 A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분쟁 학술지 및 분쟁 논문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A 회사는 B 회사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음.

(2)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 B 회사가 분쟁 학술지와 분쟁 논문을 무단으로 제공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는 A 회사의 주장에 대해 B 회사는 대부분의 분쟁 논문이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자사의 행위가 합법적 출처에 해당하며, 자사가 운영하는 학술 웹사이트에서는 단지 분쟁 학술지 및 분쟁 논문의 링크만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음.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보면 본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① A 회사가 분쟁 학술지 및 분쟁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② B 회사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1) 분쟁 학술지 및 분쟁 논문에 대한 저작권 귀속

① 1심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 회사가 분쟁 학술지 및 분쟁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첫째, A 회사가 제출한 증거의 형식에 관하여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2019년 개정)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외국어 문서 증거 또는 외국어 설명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함. 또한 제90조 제(1)항 5호 규정에 따르면 원본과 대조할 수 없는 복제본은 단독으로 사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 본 사건에서 A 회사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증 또는 인증 등의 증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그 외에도 A 회사는 자신이 제출한 증거의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고, 단지 웹페이지의 링크만 제출하였으므로 1심 법원은 해당 증거에 대한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음.

둘째, A 회사가 제출한 권리 귀속 증거의 내용에 관하여 A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물은 3권의 분쟁 학술지 및 697편의 분쟁 논문임. 이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증명을 위해 A 회사는 저작권 정보 페이지의 스크린샷 및 해당 웹페이지의 링크를 제출했는데, 그 스크린샷의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매우 흐릿하고 이미지 내에 A 회사의 상표가 희미하게 보일 뿐 “©” 저작권 표시는 확인되지 않았음. 또한 A 회사는 분쟁 논문의 일부에 대해서만 권리 귀속 증거를 제시하였고 그 중 저작권 사용 및 양도 계약에 관한 내용은 부분적으로만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존재하지 않음.

셋째, A 회사가 증거를 제출한 상황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제2조에 의하여 법원은 사건 심리 상황에 따라 당사자에게 관련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바, 법원은 A 회사에게 여러 차례 증거 제출 기간 내에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만일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설명하였으나 A 회사는 증거 제출 기간 내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 이에 법원은 A 회사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함.

② 2심 법원의 판단

본 사건에서 A 회사는 "©" 저작권 표시가 분쟁 논문의 저작권 귀속 사항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함. "©" 저작권 표시는 Copyright의 약자로 <세계 저작권 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및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출판물에 저작권을 표시하는 관행에서 비롯되었음. 이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는 "© + 작품의 최초 발표 연도 + 작품 저작권자 이름, 약칭 또는 기타 명칭"으로 구성되는데, <세계 저작권 협약>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저작권의 조건으로서 본 협약에 따른 형식적 절차를 요구하는 모든 체결국은 본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작품에 대해 그 작품이 해당국 영토 외에서 최초로 출판되고 저작자가 해당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저작권 귀속 사항을 알리기 위해 최초 출판 시점부터 저작자 또는 기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출판된 모든 저작물에 저작자의 이름 및 최초 출판 연도와 함께 © 기호가 적절한 위치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절차적 요건이 만족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¹⁾고 규정하고 있음. 중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자동 보호"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저작권 표시 부착을 보호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중국은 <베른협약>과 <세계 저작권 협약>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 저작권 표시에 기재된 정보는 당연히 중국 저작권법상 권리자 서명의 일차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본 사건에서 A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분쟁 논문에는 출판 연도, A 회사의 이름 또는 A 회사에 대한 독점적 수권 등의 정보가 포함된 "©" 저작권 표시가 비교적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시되어 있음. 분쟁 논문이 모두 <세계 저작권 협약>의 회원국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된 학술 논문인 점을 고려하면 A 회사는 "©" 저작권 표시를 통해 저작권 귀속 사항을 표시하였으며, 이는 저작권법상 서명에 해당함. 따라서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A 회사가 양도 또는 독점적 사용 허가의 방식으로 분쟁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분쟁 논문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1심 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함.

2)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

B 회사는 A 회사의 허가 없이 자사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SNS 계정을 통해 pdf 문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377편의 분쟁 논문을 사용자가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바, 이는 온라인을 통하여 대중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분쟁 논문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1)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Geneva Act) Article III

1. Any Contracting State which, under its domestic law, requires as a condition of copyright, compliance with formalities such as deposit, registration, notice, notarial certificates, payment of fees or manufacture or publication in that Contracting State, shall regard these requirements as satisfied with respect to all works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and first published outside its territory and the author of which is not one of its nationals, if from the time of the first publication all the copies of the work published with the authority of the author or other copyright proprietor bear the symbol © accompanied by the name of the copyright proprietor and the year of first publication placed in such manner and location as to give reasonable notice of claim of copyright.

행위이므로 B 회사는 A 회사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였음.

일부 분쟁 논문이 오픈 소스를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 출처의 항변이 성립한다는 B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B 회사가 일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이미 제출한 웹페이지가 열리지 않았으며, 제출된 일부 증거에는 A 회사의 저작권 표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증거는 손으로 쓴 논문으로써 A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분쟁 논문과 버전이 상이하므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음. 그 외에 A 회사는 B 회사가 분쟁 논문의 사본을 B 회사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행위가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 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 포함된 것이어서 별도로 복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음.

따라서 B 회사는 분쟁 학술지 및 분쟁 논문에 대한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의 법적 책임을 져야함. <저작권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경우 가해자는 권리자의 실질적 손실 또는 가해자의 부당 이득에 따라 배상해야 하며, 권리자의 실질적 손실 또는 가해자의 부당 이득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권리 사용료를 참고하여 배상할 수 있음. 본 안건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권리자의 실질적 손실 또는 가해자의 부당 이득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참고할만한 권리 사용료에 관한 증거도 없으므로 법원은 분쟁 학술지 및 분쟁 논문의 시장 가치, B 회사의 저작권 침해 방식, 영향 범위 등을 포함한 침해 정황,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8만 위안을 배상금으로 책정함.

3. 판례분석

본문의 판례는 주로 “©” 저작권 표시를 통하여 저작권 표기가 된 학술지 및 학술 논문의 저작권 분쟁으로서 구체적으로 “©” 저작권 표시가 저작권법상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저작권 귀속의 증거로서 가능한지 여부가 주로 다루어졌음. 따라서 아래에서는 “©” 저작권 표시의 내용과 그 법적 성격에 대해 살펴봄.

(1) 저작권 표시의 기본 내용

“©” 저작권 표시는 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나타내고 있다는 표지로서 과거 저작권 발생에 대하여 방식 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때에는 “©” 저작권 표시가 있어야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베른협약>에서 저작권 발생에 대해 무방식 주의를 채택한 이후 사실상 “©” 저작권 표시의 실질적 역할은 사라지고 현재는 형식적인 의미만 남아있음. 따라서 <세계 저작권 협약> 제3조 제(1)항에서는 “©” 저작권 표시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창작된 저작물 및 외국인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 저작권 표시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적절한 위치에 표시되어 있으면 체결국의 국내 법에 의해서 내국인과 동일한 정도의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방식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저작물에 “©” 저작권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중국 역시 1992년부터 저작권 자동 보호 원칙(著作权自动保护原则)을 채택하여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 저작권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기

만 하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작권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무국적자의 저작물은 그 저작자의 소속 국가 또는 상주 국가와 중국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 협약에 따라 저작권을 가지는 경우 본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저작물이 중국에서 최초로 발표된 경우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국제 조약에 공동으로 참여하지 않는 국가의 저작자 및 무국적자의 저작물이 중국이 참여하는 국제 조약의 회원국에서 최초로 발표되거나 회원국과 비회원국에서 동시에 발표된 경우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물 성립 요건을 만족하는 저작물은 “©” 저작권 표시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2) 저작권 표시의 법적 성격

비록 “©” 저작권 표시가 저작권 발생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해 실질적인 영향이 없지만 적절한 방식으로 표기된 “©” 저작권 표시는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저작물에 성명을 표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짐.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일차적으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 저작권 표시는 저작권 귀속을 증명할 수 있는 일차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저작자가 저작물에 성명을 표시하는 방법은 서명, 직인, 워터마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나 반드시 저작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함. 워터마크를 사용하여 저작물에 서명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그 워터마크를 통하여 저작자의 신분이 나타날 수 있어야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지 워터마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 귀속이 자동적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님.²⁾ 이와 마찬가지로 “©” 저작권 표시 역시 저작권법상 유효한 서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저작자의 신분을 나타내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저작권 표시는 “© 심볼, 발표 연도, 저작권 소유자의 명칭”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작물의 발표 시기 및 저작자에 성명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 저작권 표시는 저작자의 성명을 유효하게 표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 저작권 표시가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명칭 등과 같이 저작자의 신분을 나타낼 수 없는 방식으로 표기되었다면 그 “©” 저작권 표시는 적절한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4. 시사점

본문의 판례는 “©” 저작권 표시가 저작권 발생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이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 저작권법상 성명표시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등록증, 저작물 아이디어 노트, 초고 등과 같이 저작권 귀속을 증명하는 일차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줌.

2) (2019)川01民初522号

■ 참고자료

판례

- (2022)京0491民初20446号
- (2024)京73民终436号
- (2019)川01民初522号

중국판권잡지(中国版权杂志)

- https://mp.weixin.qq.com/s?__biz=Mzg4MDgwOTA4Mw==&mid=2247493929&idx=1&sn=2c43c1dc9d920e35d01b5139e23509fe&scene=21#wechat_redirect